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: 『Young 하나 통장』 특약
2. 변경 시행 예정일: 2017년 2월 15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수수료 우대 대상 외국통화별 우대율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Young 하나 통장』 특약	『Young 하나 통장』 특약	
제 1 조 ~ 제 6 조 (생략)	제 1 조 ~ 제 6 조 (좌동)	
제 7 조 부가서비스	제 7 조 부가서비스	
<p>① 은행은 이 상품 가입일부터 이 통장 가입자가 KEB하나은행 창구에서 본인의 배낭여행, 어학연수, 유학 관련 자금용도로 <u>외국통화 매매 시에 매매마진율을 70%까지 우대 합니다.</u></p>	<p>① 영업점 창구에서 본인의 배낭여행, 어학연수, 유학 관련 자금용도로 <u>외화 현찰(지폐) 환전이나 해외 송금 시 환율 우대를 제공합니다.</u></p> <p><u>- 주요통화 USD/JPY/EUR :Spread 의 50%,</u> <u>- 그 외 11 개국 통화 : Spread 의 20%</u> <u>(11 개국 통화 : HKD, THB, SGD, NZD, AUD, GBP, CAD, CHF, SEK, DKK, NOK)</u></p>	대상거래 및 통화별 우대율 명확화
② ~③ 생략	② ~③ (좌 동)	